옹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

제1조(명칭)
본 회는 '옹동초등학교 학부모회'라 한다.(이하 '본 회'라 칭한다)

제2조(목적)
본 회는 옹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, 학부모회의 자치 역량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본 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
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·지원③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④ 그 밖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

제4조(회원)
회원은 본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 (부모,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라 보호, 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)

제5조(권리)
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.
①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
② 본 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
③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
제6조(의무)
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①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
② 학교교육과정을 존중하고, 협력할 의무
③ 회원간 단결하고 참여할 의무
④ 본 회의 회칙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
⑤ 본 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

제7조(임원의 구성 및 직무)
① 학부모회에는 **회장 1명의 임원**을 둔다.
② 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.
③ 결원 시 재선출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
④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)
①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인 경우는 졸업식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재선출의 경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② **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, 연임할 수 있다.**

제9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총회소집은 7일 전까지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④ 총회는 회원의 **1/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**한다.
⑤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① 본 회 활동 계획 수립
② 본 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
③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④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재정지원 등)
① 본 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후원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한다.
②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.
③ 본 회의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④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해산)
① 학교 통·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·폐합 일자로 해산한다.
②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
③ 본 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.

제13조(청산)
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(재정지원 등)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

부 칙
제1조(시행)
이 규정은 본 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